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이 선 화

ETRI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연구원, TTA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 의장

본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최근 정보통신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TTA의 지적재산권 연구위원회 위원들이 각 기구의 관련 지침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호는 그 마지막 순서로 TTA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94년 기술총회에서 잠정(안)으로 채택된 지적재산권관련 지침안을 소개하고 그간에 시리즈로 게재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I.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II. 국제 표준화기구(ITU)의 지적재산권 정책

III. 유럽 표준화기구(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

IV. 미국 표준화기구(ANSI, T1)의 지적재산권 정책

V. 일본 표준화기구(TTC, RCR)의 지적재산권 정책

VI. TTA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안)

VII. 결론 및 국내 대응방향

IV. TTA의 지적재산권 정책

1. 지침(안) 수립 배경 및 논의사항

1. 지침안 작성 배경

점차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으로서 표준화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비약적인 신기술개발 및 보급은 첨단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제도적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표준'은 가장 경제성이 큰 상품(good)의 하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가 신속하고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첨단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과 상충되고 있으

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ITU, ETSI, ANSI, TTC, T1 등의 주요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처리 지침 내지는 기본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 지침안을 검토중에 있다. TTA 역시 TTA 표준의 효율적 제정과 보급·활용을 위하여 이에 관계되는 지침들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TTA 표준을 위한 지적재산권 취급지침 잠정(안)'을 마련하였다.

TTA는 그동안 국내 유일의 정보통신분야 표준화단체로 단체표준을 제정하며 국가표준을 제안해 왔다(1994년 12월말에 고시된 전기통신표준화지침에 따라 TTA의 업무는 재조정될 예정임). 그간 제정한 많은 TTA의 표준이 국내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국제표준을 국내화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 TTA 표준화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경우는 없었지만, 표준화에 있어 지적재산권 문제가 ITU를 비롯한 각국의 표준화기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TTA 표준의 범위 확대와 양적 증가에 따라 표준화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얹힐 위험이 높아졌다. TTA는 이에 대한 인식을 하고 1990년 산업체산권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94년에는 표준화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 효율적인 표준화추진을 하기 위하여 기본 가이드라인이 되는 잠정지침을 작성하였다.

2. 지침안 목적 및 주요 내용

'TTA 표준을 위한 지적재산권 취급지침 잠정(안)'(이하 'TTA지침(안)'이라 함)은 TTA 표준의 작성, 보급·활용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처리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 지침(안)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언급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주요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TTA 지침(안)의 초안은 작성 후 회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그 결과 지침안의 선언적 규정, 지적재산권의 조사문제, 계약의 문제, 책임의 문제 등에 관하여 이견이 없지 않았으나 수차례의 협의와 TTA 표준총회에서의 논의 후에 잠정(안)으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1994년 11월 표준총회에서 통과된 'TTA 표준을 위한 지적재산권 취급지침 잠정(안)'의 기본 원칙은 각 회원사간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있는 TTA 표준의 보급·활용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문제 가 제기되는 경우 가능한한 회원사 및 관계자들의 합의된 의견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TTA는 가능한 한 표준의 보급·활용을 위하여 관련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실시함을 권장하되, 관련 지적재산권이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도록 하였다. 이 TTA 지침(안)은 크게 전문과 본문, 부록 별지로 구성되며, 서술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전문에서는 TTA 표준화과정에서의 기본원칙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표준화추진이 가능한 경우와 이를 위한 절차(주로 지적재산권자의 협약에 관계되는 사항), 지적재산권 확인 책임, 표준화이후 판명된 지적재산권처리 방법, 지적재산권자문위원회 구성등이 규정되어 있다. 부록에서는 지적재산권자의 협약을 받게 될 때 사용하는 서류양식을 하여 방식별(무상하여, 조건부하여, 허여거절)로 나누어 첨부하고 있다. TTA 지침(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향후에는 이번 지침(안)에서 생략된 계약문제, 비회원 문제를 포함한 적용범위, 협약서 제출후의 재심사, 심사위원회 등의 구성문제 등이 세부지침

안의 제정 필요성 검토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잠정시행 후에 발견되는 사항들을 감안한지침(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TTA 표준을 위한 지적재산권 취급 지침 잠정(안)

TTA 표준을 위한 지적재산권 취급 기본지침 잠정(안)

1994년 11월 일
기술총회 결정

TTA 표준은 각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연구위원회에서 작성된 표준안을 공정성, 개방성,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술총회에서 채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TTA 표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적재산권에 관련되는 경우에도 회원이나 그밖의 관련당사자들의 의지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TTA는 TTA 표준의 보급·활용을 고려해서 표준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지적재산권을 만인에게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한다. 단 표준화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TTA는 ‘TTA 표준을 위한 지적재산권 취급 기본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 지침에서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저작권과 신지적재산권까지를 지칭하며 여기에는 출원 중인 것도 포함된다. 또한 ‘실시’라 함은 지적재산권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는 표준을 사용한 물품과 용역의 생산, 사용, 양도, 수입, 판촉전시, 대여와 같은 유·무형의 표준이용 행위 일체를 말한다.

1. 표준화 추진대상

TTA는 TTA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1) 또는 (2)를 선택하면 TTA 표준 대상이 된다.

(1) 해당권리소유자가 해당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TTA 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실시를 허락한다.

(2) 해당권리소유자가 해당권리의 내용 및 조건을 명확히 하여 TTA 표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적절한 조건하에 비례타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실시를 허락한다.

단, (1) 또는 (2)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그 실시허여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지적재산권 실시를 허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표준화 추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적재산권자의 확약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확약서 제출은 아래사항을 따른다.

(1) 확약서 제출

해당권리소유자는 TTA 표준 작성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관계되는 경우 확약서를 TTA(사무총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확약서는 표준화 추진대상 1-(1) 또는 1-(2)항의 경우 및 지적재산권 실시허여를 거부한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확약서 양식은 별지 1, 별지 2, 별지 3의 서식에

따른다.

(2) 확약서 제출기한

확약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TTA 표준안 작성 전까지로 하며, 출원공개전에 제출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출원공개후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적재산권 가운데 권리가 불성립 또는 소멸한 것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

(3) 확약서 보관 및 주지사항 기재

TTA(사무총장)는 해당권리소유자로 부터 확약서를 접수, 보관하고, 1-(1) 또는 1-(2)에 따라 실시가 허여되었을 경우 표준문서에 다음 내용의 주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주지내용 :

표준의 사용자는 당 표준내용의 전부 및 일부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당 표준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당 표준의 출판으로 인하여 당 표준관련 지적재산권의 지위가 변화되지는 않는다.

본 표준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인 XXX의 권리는 YYY가 보유하는 것이지만, 본 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적절한 조건하에 비배타적으로

해당 XXX의 실시를 허락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판권자에게 문의한다.

(4) 확약서의 미제출에 관한 책임

TTA는 해당권리소유자가 확약서의 제출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2. 지적재산권자 확약'에서 규정하는 상기사항 이외에는 TTA 표준화절차에 따른다.

3. 지적재산권 확인 책임

TTA는 TTA 표준이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없으나 표준안을 제안하는 해당 연구위원회는 표준작성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필요로 범위내에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추진중에 있는 표준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자는 이를 지체없이 표준안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표준안이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의 거중책임은 지적재산권 허여자에게 있다.

4. 표준화이후 판명된 지적재산권

TTA 표준화정 후 밝혀진 지적재산권의 경우도 본 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지적재산권 자문 위원회 구성

본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운용하기 위하여 TTA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조직과 운영은 TTA가 정한다.

자문위원회는 표준안이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발생한 제반 사안에 대해 TTA 자문에 응한다.

6. TTA의 지적 재산권

TTA와 그 산하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준관련 문서 일체에 관한 저작권은 TTA가 소유한다.

* 첨부(본 고에서는 생략)

[별지 제 1호 서식] 표준을 위한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1-(1)의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 표준을 위한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1-(2)의 경우

[별지 제 3호 서식] 표준을 위한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 허여거절의 경우

VII. 요약 및 결론 – 국내 대응방향

1. 주요 표준화기구들의 지적재산권정책 요약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라 함),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이하 'ETSI'라 함),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이하 'ANSI'라 함), T1(Committee T1–Telecommunications),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이하 'TTC'라 함), RCR(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Radio System, 이하 'RCR'이라 함) 등 주요 표준화기구와 TTA의 지적재산권정책을 살펴보았다.

주요 표준화기구들이 취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정책은 각 표준화기구가 가진 특징, 사회·문화적 배경, 처해진 상황 등에 따라 기본입장, 처리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같다. 즉, 표준화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소유자에게 지적재산권 이용에 대한 허여를 요구하게 된다. 허여가 되는 경우만이 표준화추진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경우에 따라 유상 혹은 무상이 될 수 있다. 허여를 거절하게 되는 경우는 표준화추진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처는 기구별

로 다르다. 또한, 공통적으로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내용을 확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면형태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 기구별로 몇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ITU의 경우, 구CCITT(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에서 1976년 처음으로 특허의 취급에 관한 검토를 한 이후 이러한 문제의 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1985년 초판을 발간하였다. 이후 내용에는 큰 변화없이 새 버전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현재는 조직개편 이후 TSAG(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회의에서 개선안을 논의중에 있다. 1993년 열린 TSAG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정책 기본방향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으며, 다만 관련된 절차등을 개선하고자 논의하였다. 1995년 1월 제네바에서 열린 TSAG 회의에서도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토의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ITU 표준의 저작권문제, ITU 표준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정보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구축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일본 KDD측으로부터의 ITU의 지적재산권 확인 등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의 포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는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재 적용중인 지적재산권 정책은 1993년 7월에 채택된 '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로,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선·후진국의 의견대립 등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여러기구들 중 가장 간단명료하게 기본이 되는 사항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허(라이센스, 로얄티)에서 발생하는 상세한 합의사항(arrangement)들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해 당사자에게 일임됨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ITU 지적재산권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대표적 표준화기구인 ETSI는 설립 이듬해인 1989년부터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왔으며, 1993년 3월 총회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olicy & Undertaking'을 잠정채택한 바 있다. ETSI는 전형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기술공동소유와 역외 국가들에 대한 기술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양면 전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발효중인 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있어 간단명료한 원칙만을 정해두고 가급적 개입을 피하고 있는 타기구와는 달리,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경우들을 고려하여 세세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ETSI사무국장의 '분쟁중재의 노력'과 같이 ETSI 자체의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하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회원의 탈퇴를 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한 강제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타기구들이 주로 특허 혹은 의장, 실용신안까지만을 다루는데 반해 ETSI는 특허, 의장, 실용신안은 물론 일부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분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은 주요 표준화기구들 가장 상세한 내용과 넓은 범위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치밀하게 만들어졌으나,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다소 성급하게 잠정안이 발효됨으로써 현재 적지 않은 회원들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ETSI 지적재산권 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적용지역이 유럽공동체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어 장래

역외국에 대한 차별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특히 CBEMA(Computer and Business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CBEMA는 미국의 컴퓨터 및 사업장비 제조자협회로 정보처리분야의 표준화작업을 하고 있는 X3위원회를 후원하고 있다)는 ETSI 지적재산권 협약서가 EU의 경쟁규정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CEC(Commi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ETSI는 CEC로부터 문제되는 내용들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TSI는 이러한 사항 중 특히 쟁점이 되는 4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미국의 ANSI, T1위원회에서의 지적재산권정책은 표준화문제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경제철학과 체제이념을 반영하여 시장의 왜곡없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가가 기본적인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표준화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표준제작자 또는 이용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다. ANSI의 특허정책도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고 있으며, 다만 이의소원위원회(ANSI Appeals Board)를 두고 필요시 면허조건 심사와 표준승인이나 승인처리에 관한 이의제기문제를 다루고 있다. T1의 경우는 그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표준화와 특허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결국 ANSI의 특허정책을 전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합의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일본 표준화기구들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표준의 공적활용과 특허의 사적소유의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타기구와는 달리 가급적이면 표준화와 관련

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만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 표준화기구인 TTC에서는 1988년 첫 사례가 발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작성하고 이것들이 현재까지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정책이 되었다. 첫 사례에서는 로열티를 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무상공개에 대한 간단한 문장을 각 권리자로부터 제출받았고, 이것을 전제로 당 건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이후 지적재산권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이 처리방안이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RCR도 TTC와 거의 유사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를 다른나라에서 RCR의 해당표준이 사용되는 경우까지를 고려하며, ETSI와 같이 필수지적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TTC와 RCR의 지적재산권정책은 일본 특유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제품화를 통한 시장에서의 강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 TTC 표준화활동에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첨단 지적재산권들을 무상으로 공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일본의 보이지 않는 전략이 엿보이는 일면이 있다.

한편, 우정성의 자문기구인 TTCCouncil(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uncil: 전기통신 기술심의회)은 [평성2년도 전기통신기술심의회 답신]에서 표준화기구들의 지적재산권정책과 관련하여 차별(discrimination)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준이 사회전체의 이익증대와 통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되고 있으므로 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료로 제공되는 등의 차별적 취급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답신에서는 각 분야에서 TTC, RCR, BTA의 세기관이 각자 별도로 지적재산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TC, RCR, BTA는 모두가 우정성의 소관기관으로서 각 분야에서 표준을 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특히 등의 권리를 다루는 취급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TTCCouncil의 조직성격상 이러한 제언을 통하여 일본 우정성의 지적재산권정책의 향후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

2. 국가차원의 지적재산권 취급지침(안) 수립 방향

(* 본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준비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므로 향후 확정·고시되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94년부터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1994년 12월에 고시된 "전기통신표준화지침" 및 "전산망표준화지침"에서는 지적재산권취급지침 조항을 별로도 마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화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취급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 지침의 제 23조에서 규정함). 1995년도에는 이를 근거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세부지침은 '정보통신표준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취급지침(안)'이란 이름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이미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다른나라의 주요 표준화기구들의 지적재산권정책들을 비교검토하여 우리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정보통신표준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취급지침(안)'은 그 형태면에서 그간 국가에서 제정·시행

하고 있는 다른 법규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다른 나라 표준화 기구들의 지적재산권정책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 및 지침들을 고려하여 자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및 시장 경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아직까지 다분히 선언적인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둘째, 기술수준에 있어서 중진국, 지적재산권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 중후진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분명한 지적재산권지침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개방 등이 구체화될 경우, 오히려 국내 진출 외국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국내 정보 통신산업 발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셋째,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추진에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간 대 민간의 문제로 정부차원에서는 커다란 방향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민간차원에서 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표준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취급지침’은 상세하고 엄격한 지침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융통성을 가진 선언적인 형태로 작성되었다.

전체적인 방향은 다른 표준화기구와 마찬가지로 표준화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관련지적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게 된다. 검토 후 관련 지적재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소유자에게 지적재산권 이용에 대한 허여를 요구하고, 허여가 되는 경우에 표준화를 추진하게 되며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내용을 확약하는 것을 서면형태의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골자를 항목별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적재산권의 범위 :

많은 표준화기구에서는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신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증대와 첨단기술

분야는 산업재산권 뿐만아니라 신지적재산권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 국내 지침에서는 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저작권을 비롯해 프로그램저작권, 배치설계권 등의 신지적재산권도 포함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 취급의 기본원칙 :

우리 지침은 ‘표준화추진에 있어서 관련 지적재산권의 취급은 표준의 공공성과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권리간의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련 지적재산권이 무조건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표준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이용은 표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자에게 공평하고 비배타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평하고 비배타적이라 함은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이용자에게 허여된 이용조건들이 차별이 없으며, 표준이 적용되는 어느지역 어디에서든 이용이 허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용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과 관련하여 물건의 생산·양도·대여·수입·전시나 관련방법의 사용, 반도체집적회로의 복제·제조·양도·대여·전시·수입, 저작물과 관련된 공연·실연·복제·배포·발행·공표, 그리고 프로그램의 복제·개작·공표·발행·배포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표준화시 지적재산권의 조사·검토 :

가능한 표준화초기에 지적재산권의 조사·확인이 된다면 신속한 표준화제정과 표준화 자원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의 매몰화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침에서는 표준안 제안자가 표준초안 작성시 지적재산권의 관련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존재를 인지한 자는 누구든 지체없이 표준안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사·확인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당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표준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지적재산권 이용에 대한 기술적인 가치, 지적재산권에의 투자정도, 지적재산권의 잔존기간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자의 의사확인 및 확약서 제출 등 :

표준화추진에 있어 조사·검토된 지적재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에게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용을 확약서의 형태로 제출받게 된다. 이 때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지적재산권자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모든 자에게 무상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자가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조건하에 비례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 거절하는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표준초안을 작성하고 이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검토사항, 확약서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확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지적재산권 이용조건의 합리성이 심사되어야 한다. 단, 이용조건은 지적재산권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허여 거부시의 조치 및 표준안 작성 이후 판명된 지적재산권의 처리 :

지적재산권의 이용의 허여를 거부하거나 기간내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표준총회 및 전산망표준심의회 또는 해당연구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표준초안 작성후 혹은 표준채택후 지적재산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본 지침에서 규정한 지적재산권검토, 표준안 검토, 확약서제출요청 등의 일련의 절차에 준한다.

○ 책임의 귀속 :

국가지침에서는 확정 또는 사용중인 표준과 관련

된 지적재산권의 법적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지적재산권자와 당해 표준의 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개의 표준화기구와 마찬가지로 국가지침에서도 원칙에 대한 기본성이 드라인만을 하고 최종적인 지적재산권의 허여계약 등은 민간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며, 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분쟁문제 역시 당사자에게 일임하도록 하고 있다.

3. 결론

마지막으로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함께 노력해야 할 몇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그동안의 연재 시리즈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향후 국가표준화 추진의 효율화 및 국가 지적재산권 취급지침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많은 표준화 참여자들은 공학도들로 지적재산권의 복잡한 법적문제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역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자나 법률전문가들은 표준화의 공적 활용이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복잡하게 얹히게 되는 경우 '표준의 공적 활용과 지적재산권의 사적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분쟁발생시 신속하게 이를 중재할 수 있고 협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도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둘째, 국내 표준화 체계에 따른 유연성있는 지적재산권정책의 운용과 우리 나름대로의 국내정책과

국제전략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표준화 체계는 다른 표준화기구와 달리 표면상 국가주도의 표준을 추진하고 있어 지침의 윤용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실제사례를 다루면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표준화기구의 제도들을 참고하여 상호양립가능한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되, 우리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나름의 제도를 정착하여 나아가야겠다. 실제 우리가 분석하여 참조한 많은 표준화기구의 성격은 민간차원의 단체표준화기구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국내적으로는 기술보호와 신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국제적으로는 비차별적으로 저렴하게 특허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와 국제전략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째, 국제적인 기술 보호나 기술 습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및 지역회의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신속한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국제적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회의에의 적극적 참여는 첨단기술의 습득과 보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분쟁사례를 통한 선도기술의 국제적 추이 예견 및 연구 방향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표준화분야는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고 대내외적으로 산업 및 기술경쟁력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부 및 관련기관간의 기능조정과 역할분담 등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될 것이며, 첨단기술분야의 특허 등이 표준화와 관련된 경우에는 향후 시장수요예측 및 기술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적재산권이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박기식, 이선화, "기술사유의 지적재산권과 기술공유의 표준화 전략", 월간 정보통신시대, 1994.4.(주) 정보시대. pp.123-128.
2. 박기식, 이선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 주요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중심으로-", 제 4회 ITU 교육 프로그램 강연 자료집, TTA, 1994.5.17. pp.93-107.
3. 박기식,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제 4회 전산망 기술 및 표준화심포지움 Poceeding, NCA, 1994. 6.3. pp 5-22.
4. 이선화, 정석호, "주요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 TTA Journal 제 33호, TTA, 1994.6. pp. 66-76.
5. 이선화, 이건찬, "주요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I)", TTA Journal 제 34호, TTA, 1994.8. pp. 94-108.
6. 김승진, "주요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III)", TTA Journal 제 35호, TTA, 1994. 10. pp. 113-121.
7. 이선화, 한광수, "주요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V)", TTA Journal 제 36호, TTA, 1994.8. pp. 94-108.
8. 한국통신기술협회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자료집", TTA, 1994.8.
9. 名和小太郎, 技術基準對知的所有權, 中央公論社, 동경, 1990.
10. 石黑一憲, 情報通信知的財產權의 國際的 視點, 國際書院, 동경, 1990.
11. 電氣通信技術審議會, 平成 2年度 電氣通信技術審議會答申, 電氣通信技術審議會, 동경, 1992.

- 3.25. pp 99-117.
12. 電信電話技術委員會, 工業所有權等の取扱, 電信電話技術委員會, 동경, 1991.3.
13. 電波システム開発センタ, 標準規格に係る工業所有權の取扱に関する基本指針, 電波システム開発センタ, 동경, 1991.6.
14. Nicholson, Ron and Roger Miselb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Commed Publishing Co.,1993. pp.4-143.
15. Nicholson, Ron and Roger Miselb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Commed Publishing Co.,1993
16. Mark Shurmer and Gary Lea,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A Fundamental Dilemm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 10th Annual Conference, Sydney, Australia 3-6, July 1994.
17. Gerard Robin, "The European Perspective for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Vol.32 No.1. 1994.1.pp. 40-44.
18. ITU-T Doc., Consider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ITU-T\TSGA\DT\110E.WW2, Geneva, 14-20 April 1994.
19. ITU-T Doc., The SPR's Report in some "Lessons Learned"regarding Current Patent Policy Practice of Joint CCITT and ISO/IEC Recommendations Standards, Geneva, 27 April - 6 May 1993.
2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COM(92), 445 final, Brussel, 27 October 1992.
21. ETS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 Undertaking, 1993.

<약 어>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CBEMA	: Computer and Business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CCITT	: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CEC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CR	: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Radio System
TSAG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TSB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TTA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C	: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